

제337회 임시회
2015.02.05.(목)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충청북도의회
교육위원회

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5.01.28.(수)

교육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: 충청북도교육감

나. 제출일자: 2015년 01월 19일

다. 회부일자: 2015년 01월 20일

라. 상정일자: 2015년 01월 28일

(제33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○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: 행정관리국장 박종철)

가. 제안이유

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한시기구를 삭제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한시기구 중 존속기한(2015. 2. 28.까지)이 도래한 방과후학교 지원단을 삭제함(안 제6조제2항)

3. 검토보고 요지

(수석전문위원: 반기환)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방과후학교지원단은 정부정책에 따라 한시기구로 설치¹⁾하여 운영하였으나 존속기한(2015. 2. 28.까지)이 도래함에 따라 삭제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“생략”

5. 토론요지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: “원안가결”

7. 소수의견요지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“없음”

9. 첨부서류: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)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(2012. 12. 12.) 의결, 2012. 12. 28. 시행

충청북도 조례 제 호

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교육국) ① (생 략)</p> <p>② <u>방과후학교지원단은 한시기구로</u> <u>하며, 기구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</u> <u>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</u></p>	<p>제6조(교육국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 제></u></p>

관 계 법 령 발 취

□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[시행 2014.6.11.] [대통령령 제25375호, 2014.6.11., 타법개정]

제5조(기구 설치 시 고려사항) ① 교육감은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
1.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·독자성·계속성
2.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
3.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구와의 균형성
4. 학교와 교육 수요자 등에 대한 현장지원을 중심으로 고려한 효율성
5. 통솔 범위, 기능의 중복 여부 등 기구의 능률성
6. 사무의 위탁 가능성

② 교육감은 위탁이 가능한 사무나 행정협의회 등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무에 대해서는 기구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.

제7조(한시기구의 설치·운영) ① 교육감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.

② 분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량과 업무의 중요성이 있어야 한다.

③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.

④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⑤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차례만 할 수 있다.